

성남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정 2007.08.06 조례 제2124호
개정 2009.04.27 조례 제2316호
개정 2011.12.16 조례 제2532호
(성남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개정 2013.11.13 조례 제2757호
개정 2015.04.13 조례 제2873호
개정 2016.09.30 조례 제3016호
개정 2019.09.16 조례 제3407호
개정 2022.09.26 조례 제3796호
개정 2023.12.11 조례 제4010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역량개발을 위하여 성남시 청소년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1.13., 2019.9.16., 2022.9.26.>

제2조(설립) 성남시 청소년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개정 2013.11.13.>

제3조(사업)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1.12.16>

1. 청소년활동 진흥에 관한 사업
 2. 청소년보호·복지·상담에 관한 사업 <개정 2013.11.13>
 3. 청소년 시설 및 사업에 대한 조정과 운영·관리 기능 <일부개정 2019.9.16.>
 4. 학교 교육과정 연계·지원 및 평생학습 관련 사업 <본호신설 2015.4.13>
 5. 청년의 교육·복지·문화·참여 등 자립기반에 관한 사업 <본호신설 2023.12.11.>
 6. 그 밖에 시민 및 청소년, 청년의 건전한 성장과 역량개발을 위한 사업 <개정 2013.11.13., 2019.9.16., 2022.9.26., 2023.12.11.>
- ② 재단에서 수행하는 사업 중 청소년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신설 2009.4.27.> <일부개정 2019.9.16.>

제4조(기본재산의 조성)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3.11.13>

② 시는 재단의 설립, 시설,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5.4.13.>

제5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일부개정 2019.9.16.>
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삭제 2019.9.16.>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일부개정 2019.9.16.>
8. <삭제 2019.9.16.>
9. 사업에 관한 사항
10.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 <본호신설 2019.9.16.>

②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본항 개정 2019.9.16.>

제6조(임원 등) ① 재단에는 이사장·대표이사를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개정 2013.11.13, 2016.9.30.>

② 이사장은 시장으로 한다.

③ 임원의 임기와 임면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4.13., 2019.9.16.>

제7조(이사회) ① 재단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일부 개정 2019.9.16.>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3.11.13.>

제8조(위원회) ① 재단의 공개적이고 전문화된 경영을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일부개정 2019.9.16.>

③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열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9.9.16.>

④ 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4.13., 2019.9.16.>

제9조(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개정 2013.11.13., 2019.9.16.>

제10조(운영재원 등)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 재단사업 수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3.11.13.>

제11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따른다. <개정 2013.11.13.>

제12조(사업계획과 예산·결산) ①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3개월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일부개정 2019.9.16.>

② 재단은 매사업 연도의 세입·세출에 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3월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재단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의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으로 빌려 줄 수 있다. <개정 2013.11.13., 2019.9.16.>

제14조(보고·검사·감사 등) <본조개정 2019.9.16.>

① 시장은 재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보고 및 자료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업무·회계·재산에 대한 검사 또는 감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또는 감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재단에 시정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5조(인력지원 요청) ① 재단이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인력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11.13., 2019.9.16.>

② 재단은 요청에 따라 근무하는 직원에게 근무에 따른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13.11.13.>

제16조(운영규정) 재단은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과 자치법규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운영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개정 2013.11.13, 2015.4.13., 2019.9.16.>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일부개정 2019.9.16.>

부칙(제정 2007.08.06 조례 제21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9. 4. 27 조례 제23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1.12.16 조례 제2532호 성남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2012년 3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부칙(개정 2013.11.13 조례 제27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5.4.13 조례 제28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16.9.30. 조례 제30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19.9.16. 조례 제34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22.9.26. 조례 제37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23.12.11. 조례 제40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청소년수련관 명칭 및 위치

명 칭	위 치
성남시 수정청소년수련관	성남시 수정구 희망로509번길 20(신흥동)
성남시 중원청소년수련관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332(하대원동)
성남시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386번길 38(서현동)
성남시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407번길 12(정자동)
성남시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	성남시 분당구 판교공원로4길 27(판교동)
성남시 분당야탑청소년수련관	성남시 분당구 별말로30번길 35(야탑동)

청소년 문화의 집 명칭 및 위치

명 칭	위 치
성남시 양지동 청소년 문화의집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83(양지동)
성남시 은행동 청소년 문화의집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516번길 24(은행동)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등 명칭 및 위치

명 칭	위 치
성남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997번길 7(여수동)
성남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997번길 7(여수동)